

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0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

1. 행위제한 사유

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행위(토지등소유자 늘리기 등) 유입을 방지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

2. 행위제한 내용

가. 제한지역

제 한 지 역			아파트명칭	행위허가 제한 기간	비고
동 명	지 번	면적(㎡)			
신천동	11-9번지 일대	13,485.3	한신잠실코아	고시일부터 3년간	신규 (정비계획 수립 중)

나. 제한대상 행위 : 토지등소유자를 늘리려는 행위 등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

다. 제한기간 : 행위제한의 고시일로부터 3년(단,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결정이 고시된 경우,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 해제됨)

3. 지형도면 : 붙임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4. 안내사항
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택사업과(☎2147-2889)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지형도면

- 한신잠실코아 및 부대복리시설

